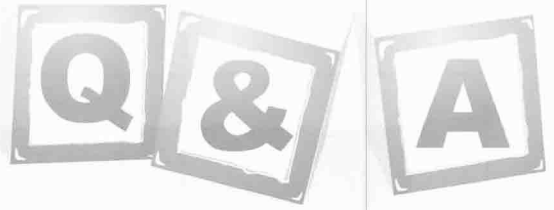


안전인증소식

Q & A



전기용품안전인증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몇차례의 개정을 통해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전부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 주의 : 본 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협회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조명기구(호텔침대, 가정용 침대등 스탠드)를 수입하려 하는데, 세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1. 조명 기구의 조명이 없이(전구, 전기선) 모형만 수입을 하더라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2. 조명기구(등기구, 스탠드)가 안전인증대상인 것으로 아는데 등기구도 여러모델이 있지 않은지? 예를 들면 전압이 틀리던지 모형이 달라서 모델번호가 틀리든지, 지속적으로 100여종 이상을 수입하면 각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3. 조명기구의 갓만 수입한다면 갓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갓의 재료가 유리 제품이라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안전검사를 받는다면 완제품 등기구의 안전인증과 갓의 안전검사를 각각 별개로 받아야 하는지?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은 최종제품조립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명 기구의 모형(부품)만 수입을 할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됨.

다만, 동 부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조명기구를 완성시키는 조립의 경우에는 전기용품의 제조에 해당되므로 안전인증을 받아 제조·판매해야 함.

또한, 수입되는 부품 그 자체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완제품과 별도로 분리하여 수입하더라도 외국의 제조업체가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함.

전기용품안전인증은 모델별로 안전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 인증을 받은 “기본모델”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제품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관련 별표1(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위한 “파생모델” 등록만 하고 수입하면 됨.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완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안전 인증을 요구하지 않음.

다만, 완제품 등기구에 사용된 부품 그 자체가 안전 인증 대상 부품인 경우에는 완제품 등기구의 안전 인증시, 동 부품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 기준에 적합 여부를 안전 인증 기관에서 확인을 하게 됨.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 제1항에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무대조명의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별표2의 11.조명기기 라. 조명기구(일반조명용에 한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음.



무대에서 사용되는 조명기기라 하더라도 가정이나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일반조명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안전 인증 대상이므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셔야 하며, 무대 장식을 위한 무빙 헤드라이트, 스포트라이트, PAR 램프, 칼라 LED 램프, 동 램프의 원격조작을 위한 컨트롤러 등 전용 조명장치는 일반조명용이 아니므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안전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